

무경계 전공제 운영 규정

제정 2025. 1. 6.

개정 2025.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경계 전공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무경계 전공제’란 창의, 융복합, 협업 등 대학의 비전에 근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전공 및 학사제도를 의미한다.

② ‘자율전공’은 문화산업의 자기주도적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주도적으로 전공과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편제정원이 있는 전공 및 제도를 의미한다.

③ ‘혁신전공’은 대학의 다양한 교육 목적을 위해 편제정원 없이 실험적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전공 및 제도를 의미한다.

④ ‘타대학 수학’은 학점교류, 컨소시엄 등으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⑤ ‘전공 배정’이란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후 희망하는 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구성) ① 무경계 전공제는 교육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자율전공, 혁신전공, 타대학수학으로 구성한다.

② 전공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자율전공

제4조(적용 범위 및 대상) 이 장의 내용은 자율전공과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자율전공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한다. 단, 전공 특성상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대학에서 정한 전체 수강신청 기간에 시행한다.

② 학생은 자율전공 개설 교과목과 전공탐색을 위해 지정한 타전공 교과목을 모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공 및 지정 교과목을 제외한 타전공 교과목 수강은 ‘자율선택 수강신청’의 절차를 따라 신청한다.

④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일반 수강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한다..

- 제7조(전공 배정 신청)** ① 자율전공 소속 학생은 해당 연도 내 소정의 기간 중 ‘전공 배정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공선택 신청시 최대 3지망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공-학생 또는 전공-학부모간 상담을 거쳐 전공을 배정할 수 있다.
- ④ 1학년 1학기 이수 중 성적을 인정받고 휴학하는 경우 미리 ‘전공 배정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자율전공 입학생은 입학 후 1년간 소속 변경을 위한 전과를 신청할 수 없다.

- 제8조(전공 배정 절차)** ① 전공 배정은 신청자의 희망 전공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공 배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③ 전공 배정은 희망전공 역량평가(60%)와 1학년 1학기 직무능력평가(40%)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 ④ 학생 역량평가를 위해 희망 스쿨(전공)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 심사 외에 면접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전공 배정은 스쿨(전공별) 역량평가 결과와 직무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무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다.
- ⑥ 1지망 불합격시 2,3지망으로 순차 배정한다.

- 제9조(이수학점 인정)** ① 자율전공 소속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공 배정 이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자율전공 이수과목	전공선택 후 이수구분
전공 교과목	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
타전공 지정 교과목	
자율선택 수강신청 교과목	전공(필수,선택) 또는 일반선택
교양 교과목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

- ② 학적 변동이 완료된 1학년 2학기부터 배정된 스쿨(전공) 교육과정을 따른다.

제3장 혁신전공

- 제10조(적용 범위 및 대상)** 이 장의 내용은 혁신전공과 혁신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11조(교육과정)** ① 혁신전공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모집단위(편제정원)가 없고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② 다양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험적 교과목, 소단위전공 운영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으며, 소단위전공의 운영과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운영

제12조(위원회) ① 무경계 전공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공 신청 및 배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무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스쿨별 1인의 전임교수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개발처 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무경계 전공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 역량평가를 위한 스쿨(전공)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스쿨(전공)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무경계 전공제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논의 하며, 4,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1. 전공 운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경계 전공제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율전공 재학생의 전공 배정에 관한 사항
5. 자율전공, 혁신전공 학생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무경계전공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공 배정 신청서

전공 배정 신청서

신청자	스쿨(전공)	
	학 번	
	성 명	
희망 전공	1순위	
	2순위	
	3순위	
유의사항	1. 전공배정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전공 배정 신청을 반복할 수 없음 3. 역량평가(60%)와 직무능력평가(40%)를 합산하여 전공배정을 함. 역량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p>본인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공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_____ (인)</p>		
<p>자율전공 지도교수: _____ (인)</p> <p>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p>		